강화된 연구윤리

PAN-PACIFIC ASSOCIATION OF APPLIED LINGUISTICS WORKSHOP

PaL Pan-Pacific Association of Applied Linguistics

한국연구재단의 윤리규정 강화 방향

- 학술지 평가 시 정량평가의 측면에서 반영

  - 미충족 시 감점

- 학술지 평가 시 정성평가의 측면에서 반영

  - 전반적인 정성평가의 측면이 점차로 강화되는 추세임

출처: 한국연구재단 학술지 평가 설명회 (2018.4.18)

정량평가

- 저자들의 연구윤리서약서 날인 필수
  - 온라인 활용 시 가산점 부여
- 연구윤리규정 및 연구윤리위원 지명
  - 지속적 관리 필요
- 연구윤리교육 실시
  - 회원 대상 정기적 온·오프라인 교육 실시

정성평가

- 표절방지 시스템의 적극적 활용 권장:

  KCI 논문유사도 검사에만 한정 X

- 표절사례 발생 시 처리 방안을 학회 차원에서 마련

  사전: 연구윤리규정에 포함

  사후: 처리 과정을 학술지 평가서에 보고

앞으로의 과제 1: 표절의 범위 규정 필요



출처: http://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42476

앞으로의 과제 2: 연구물 출판 시 연구자 소속 및 직위 명기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교육부(학술진흥과) 044-203-685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학술진흥법」 제15조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연구자 및 대학등의 연구윤리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역할과 책임에 관하여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고,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8. 연구비 지원기관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연구결과물에 연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 명시
9. 연구결과물을 발표할 경우, 연구자의 소속, 직위(저자 정보)를 정확하게 밝혀 연구의 신뢰성 제고
10. 지속적인 연구윤리교육의 참여

제6조(대학등의 역할과 책임) ① 대학등은 연구자가 연구에 전념하고 연구윤리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연구 환경과 연구 문화를 조성하는 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대학등은 연구윤리 확립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연구윤리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대학등은 연구윤리를 확보하고 연구부정행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연구수행 과정에서의 갈등이나 분쟁을 중재하거나 조정하는 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대학등은 연구부정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해 검증·판단하는 기구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⑤ 대학등은 연구자가 연구수행 과정에서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연구윤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대학등은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연구윤리 실태 조사 등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업무를 수행할 때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⑦ 대학등은 학술지 발간, 학술대회 개최, 연구업적 관리 등을 할 경우, 관련 연구결과물의 저자 정보를 확인하고 관리하며,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요청받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⑧ 대학등은 인지하거나 제보받은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하여야 하며, 교육부장관, 전문기관 및 대학등으로부터 소속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 또는 자료를 요청받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앞으로의 과제 3: 생명윤리위원회 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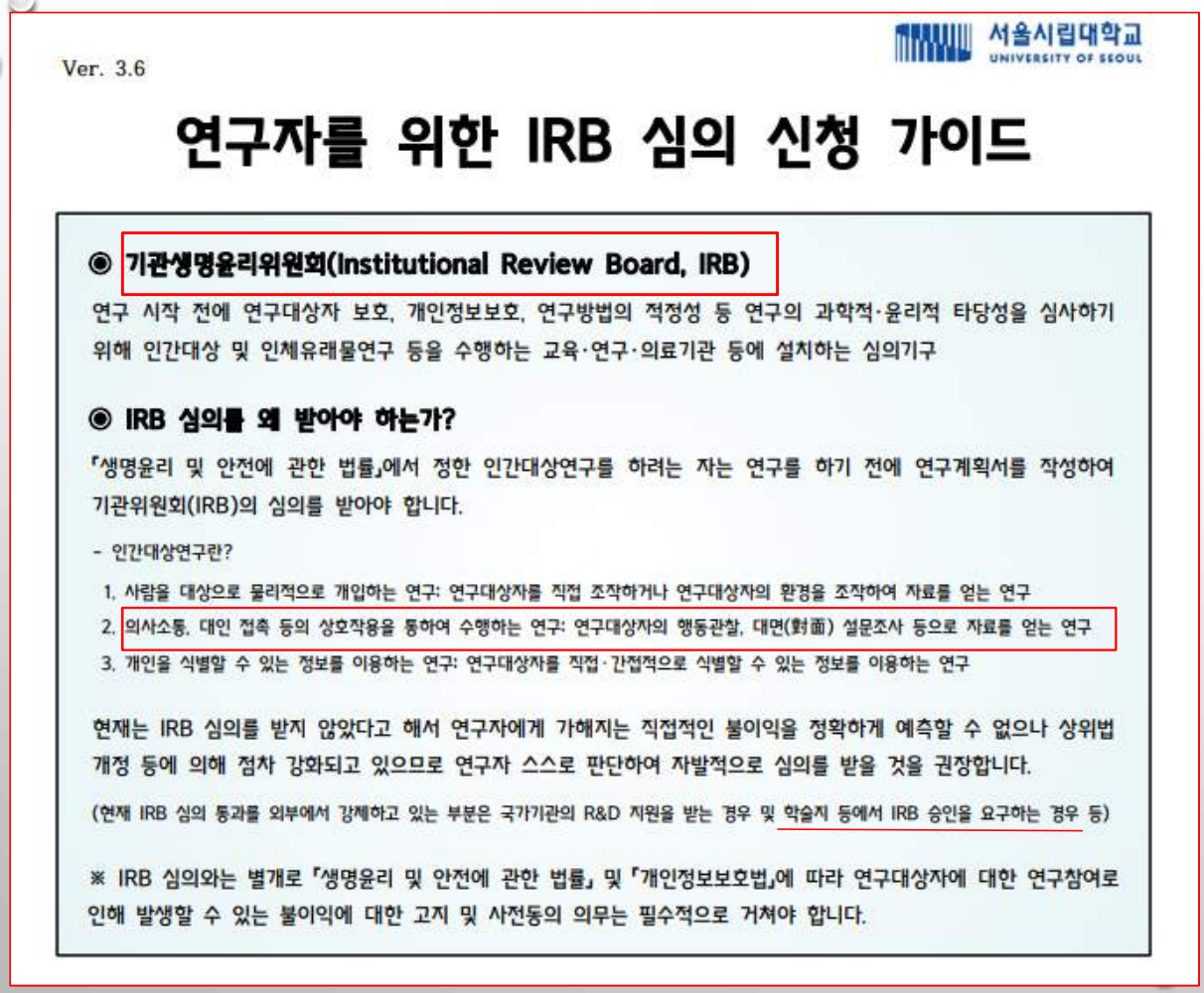

서울시립대학교 UNIVERSITY OF SEOUL

Ver. 3.6

연구자를 위한 IRB 심의 신청 가이드

◉ **기관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연구 시작 전에 연구대상자 보호, 개인정보보호, 연구방법의 적정성 등 연구의 과학적·윤리적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인간대상 및 인체유래물연구 등을 수행하는 교육·연구·의료기관 등에 설치하는 심의기구

◉ **IRB 심의를 왜 받아야 하는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인간대상연구를 하려는 자는 연구를 하기 전에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기관위원회(IRB)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 인간대상연구란?

1.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는 연구: 연구대상자를 직접 조작하거나 연구대상자의 환경을 조작하여 자료를 얻는 연구
2. 의사소통, 대인 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연구대상자의 행동관찰, 대면(對面) 설문조사 등으로 자료를 얻는 연구
3.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연구대상자를 직접·간접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현재는 IRB 심의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연구자에게 가해지는 직접적인 불이익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으나 상위법 개정 등에 의해 점차 강화되고 있으므로 연구자 스스로 판단하여 자발적으로 심의를 받을 것을 권장합니다.

(현재 IRB 심의 통과를 외부에서 강제하고 있는 부분은 국가기관의 R&D 지원을 받는 경우 및 학술지 등에서 IRB 승인을 요구하는 경우 등)

※ IRB 심의와는 별개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연구대상자에 대한 연구참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고지 및 사전동의 의무는 필수적으로 거쳐야 합니다.

한국연구재단 및 많은 대학기관 권장 사항

필요서류

- ★ 5-1, 5-2 서식 中 한 가지 필수 제출
- 1. 연구계획심의 신청서 (필수, 서명 날인)
- 2. 연구진행 서약서 (필수, 서명 날인)
- 3. 연구계획서 요약 (필수)
- 4. 연구계획서 (필수 , 별도서식 가능)
- 5-1 연구대상자 설명문 및 동의서(해당 시, 별도서식 가능)
- 5-2. 서면동의면제 사유서 (해당 시)
- 6. 이력서 (필수, 별도서식 가능)

연구대상자 설명문

연구과제명 :

본 연구는 (*연구에 대한 간략한 설명*) 에 대한 연구입니다. 귀하는 본 연구에 참여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설명서와 동의서를 신중하게 읽어보셔야 합니다. 이 연구가 왜 수행되며, 무엇을 수행하는지 귀하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연구를 수행하는 000 연구책임자 또는 000 연구원이 귀하에게 이 연구에 대해 설명해 줄 것입니다. 이 연구는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신 분에 한하여 수행될 것입니다. 다음 내용을 신중히 읽어보신 후 참여 의사를 밝혀 주시길 바라며, 필요하다면 가족이나 친구들과 의논해 보십시오. 만일 어떠한 질문이 있다면 담당 연구원이 자세하게 설명해 줄 것입니다.
귀하의 서명은 귀하가 본 연구에 대해 그리고 위험성에 대해 설명을 들었음을 의미하며, 이 문서에 대한 귀하의 서명은 귀하께서 자신(또는 법정대리인)이 본 연구에 참가를 원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간략하게 연구 배경 및 목적에 대해 기술함

2. 연구 참여 대상

연구 참여 대상자수를 특성과 함께 기술함

예시) 본 연구에는 0000 특성을 가진 00-00세 까지의 000 대상자 000명이 참여할 것입니다.

3. 연구 방법

모든 연구과정과 각종 검사법, 횟수 및 검사 등이 이뤄지는 장소에 대해 자세히 기술함

secure | irb.or.kr/UserMenu01/Summary.aspx

인간대상연구자

- 인간대상연구
- 심의면제 대상
- 기관위원회 심의 신청
- 승인 후 알아야 하는 사항
- 개인정보의 2차적 이용 및 제공
- 기록 및 보관

이용자별 맞춤 정보



인간대상연구

생명윤리법에 따른 인간대상연구란?

법 제2조제1호 및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를 수행한다면, 인간대상연구에 해당합니다.

1)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는 연구: 연구대상자를 침습적 행위 등 물리적 개입을 통해 연구대상자를 직접 조작을 하거나 연구대상자의 환경을 조작하여 얻은 자료(data)를 이용하는 연구
2) 의사소통, 대인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연구대상자 대면을 통한 설문조사나, 행동관찰 등 의사소통이나 대인 등의 상호작용을 통해 얻은 자료(data)를 이용하는 연구
3)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연구대상자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정보(information)를 이용하는 연구

생명윤리법상 인간대상연구에서 제외되는 연구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명윤리법상에 인간대상연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복리나 서비스 프로그램을 검토·평가하기 위해 직접 또는 위탁하여 수행하는 연구
2)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기관에서 통상적인 교육 관련하여 하는 연구 즉, 1과 2 모두에 해당하는 연구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단, 1) 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2)는 해당 교육기관의 장에 의한 공식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학회 별 자체 규정: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5. 접수방법: 원고 접수를 온라인투고시스템(http://kafsw.jams.or.kr)을 통해서만 진행합니다.

- 온라인투고시스템 사용방법은 첨부한 온라인투고 시스템사용방법을 참고해주십시오.
- 저자의 정보를 정확하게 기입해 주십시오. 소속, 이메일주소, 연락처, 교신저자 주저자 구분
- 온라인투고시스템을 통한 투고가 부득이한 경우 이메일 접수(kjfsw@naver.com): 제출서류-투고논문 1부, 논문투고신청서, 표절검증결과확인서- 첨부

※ 논문 및 영문초록에 투고자 이름과 소속 작성 금지
※ 투고 및 심사 진행은 교신저자의 이메일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음
※ 투고신청서는 학회홈페이지(www.kafsw.or.kr) 다운로드 또는 첨부파일 확인

※ IRB 관련 사항: 현재 IRB 심의에 대한 규정 시행이 유예 기간 중에 있음을 뜻함
I. 투고자격 및 원고제출절차
9.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는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에 따라 모든 인간 또는 인체유래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사전에 반드시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원칙을 준수한다. 2017년 2월 이후부터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지에 투고하는 모든 인간 대상 연구는 원칙적으로 IRB 심의를 받은 논문을 인정한다. 단, 2018년 12월까지는 IRB의 심사과정에 준하는 윤리규정을 이행하였을 경우 한시적으로 이를 IRB로 갈음할 수 있다.
(2017. 2. 신설)

6. 관련 문의
- 원고 접수 등: 편집간사 김현지 (kjfsw@naver.com, 010-8934-8994)
- 학회 가입, 연회비 납부 등: 총무간사(최성문 kafsw2018@naver.com, 010-4826-9576)

본 내용은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 홈페이지 내 투고규정 및 투고신청서양식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
*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홈페이지 : http://http://www.kafsw.or.kr/

『한국가족복지학 』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2018년 9월 25일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편집위원장 이채원·김기현 배상

학회 별 자체 규정: 팬코리아영어교육학회

연구윤리규정

제 2 장 연구 관련 윤리

제 1 조 (학문의 자유와 책임)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 회원은 학문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을 가지며, 그에 따른 다음과 같은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1. 사상, 종교, 나이, 성별 및 사회적 계층과 문화가 다른 집단의 학문적 업적에 대하여 편견 없이 인정하여야 한다.
2. 자신의 연구에 대한 비판에 개방적이고, 자신의 지식에 대하여 끊임없이 회의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3. 자신의 주장을 반박하는 설득력 있는 증거를 발견하면, 자신의 오류를 수정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4. 새로운 연구 문제, 사고 체계 및 접근법에 대하여 편견 없이 검토하여야 한다.

제 2 조 (기관의 승인)

연구수행 시 기관의 승인이 요구될 때, 회원은 연구를 수행하기 전에 연구계획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승인을 얻는다. 또한 승인된 연구계획안에 따라 연구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연구기관 연구비 지원을 받은 논문은 인간대상연구인 경우 IRB(기관생명윤리위원회) 승인 확인서 제출을 권장한다.

제 3 조 (연구 참여자에 대한 책임)

회원은 연구 참여자의 인격,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을 개인의 권리와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

제 4 조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

연구 참여는 자유의지로 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회원은 연구 참여자로부터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의를 얻

(학회 홈페이지에서 발췌)

PAAL 학회 향후 개선계획

○ **투고자 및 심사자의 표절 관련 의식 강화를 지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상세 규정을 신설한다.**

- 표절의 정의: 타인의 연구결과, 연구주장, 연구내용을 적절한 인용이나 승인 없이 도용하는 행위로 정의되며, 표절은 연구의 계획, 수행, 출판의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다.
- 표절행위: 이하 내용을 표절행위로 규정한다.

(1) 축어(verbatim): 타인의 저작물 중 일부 혹은 전부를 그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자기 것인 것처럼 사용하는 경우

(2) 주객전도: 인용한 원 저작물의 출처를 밝혔더라도 그 내용과 주장이 연구자의 저작물을 보조하지 않고 주가 되는 경우

(3) 간접표절: 인용한 원 저작물의 출처를 밝혔더라도 독창적 내용이 없고 이전 연구의 주장과 내용을 반복하는 경우

(4) 자기표절: 본인이 출판한 본인의 연구결과를 다시 논문에 출처를 밝히지 않고 인용하여 사용하는 경우

○ <연구윤리규정> 연구윤리에 관한 교육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회원들에게 연구윤리규정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온오프라인 정기교육을 실시하도록 강화한다.

○ <연구윤리규정> 인간대상 연구의 경우 IRB 승인을 받도록 권장하며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안내한다. 특히 연구비 수주 논문의 경우에 이 과정을 거칠 것을 적극 독려한다.

감사합니다

PaL Pan-Pacific Association of Applied Linguistics